

<표5>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 건(%)>

아는 사람 1,887(79.9)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인척 268(11.4)	직장내	친밀한 관계	채팅/ 소개로 만난 사람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성직자 / 신도	학교/ 학원내	주변인 의 지인	기타				
친족 136 (5.8)	친/인척 132 (5.6)	직장내 634 (26.8)	친밀한 관계 158 (6.7)	채팅/ 소개로 만난 사람 105 (4.45)	동네 사람 124 (5.2)	서비스 제공자 105 (4.45)	성직자 / 신도 12 (0.5)	학교/ 학원내 225 (9.5)	주변인 의 지인 -115 (4.9)	기타 141 (6.0)	모르는 사람 389 (16.5)	미상 86 (3.6)	총계 2,362 (100)

3. 2004년 상담을 통해 본 성폭력관련 동향

1) 청소년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소년법 적용의 문제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한 집단 성폭력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간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은 청소년기 특성상 범죄로 인식되기보다는 청소년기의 성적 호기심이나 억제할 수 없는 성욕구로 간주되어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본 상담소의 상담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가해자들에 의한 성폭력 역시 성인들에 의한 성범죄에 끼지 않게 폭력적이고, 심각한 문제 양상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상담소 상담통계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9.6%(274건), 2004년 7.7%(183건)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들에 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강간이 82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윤간 등 특수강간이 18건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성추행이 75건(41%), 성희롱, 통신매체이용음란 순으로 나타났다.<표6-1> 이를 전체 성폭력 피해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소년 가해자인 경우 강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1>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유형별 피해 현황

<단위: 건(%)>

유형 계	강간 82(44.8)			강간 미수	성추행	성희롱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이용촬영	스토킹	미상
	단순 강간	특수 강간	강간 치상							
183 (100)	62 (33.9)	18 (9.8)	2 (1.1)	4 (2.2)	75 (41)	7 (3.8)	6 (3.3)	5 (2.7)	1 (0.6)	3 (1.6)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피해자 역시 청소년인 경우가 87건으로 47.5%를 차지하였고, 어린이 46건(25.1%), 유아 31건(16.9%)으로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이고, 따라서 피해 연령의 특성상 피해사실이 드러나기 어려운 실정이다.<표6-2>

<표6-2> 청소년 가해자에 의한 연령별 피해 현황

<단위:건(%)>

피해자 연령대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183 (100)	18 (9.8)	87 (47.5)	46 (25.1)	31 (16.9)	1 (0.5)

2004년 전체상담 중 청소년 가해자를 고소한 건은 35건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로 청소년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년법 적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소년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중할 경우 범행의 동기와 죄질을 보아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강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조차 소년법을 적용하여 처벌을 미약하게 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본 상담소 상담사례에서 보면 같은 동네 여러 명의 청소년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를 했으나, 보호감찰처분으로 나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다시 찾아와 전학과 이사를 한 경우도 있고, 공판과정에서 가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해자 가족들은 참석하도록 했지만 비공개 심리의 원칙 하에 피해자 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 등이 있었다.

성폭력을 일종의 놀이 문화로 인식하고, 별다른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실천하고 있는 가해자들의 인식 수준이 성인과 같지는 않더라도, 성의식에 있어서는 성인 가해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관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¹⁾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미성년자라고 해 무조건적인 관대한 처우를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처벌뿐 아니라 가해자 교육을 통해 잘못된 성의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을 경우 성인이 된 후에도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기 쉽고,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를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범죄 예방이나 건강한 성문화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이라는 잘못된 사회문화적 현상을 경험하는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또 다른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사회정의는 실현된다는 믿음 속에 피해를 치유해 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해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가사소년제도개혁위는 소년법의 연령하한을 현재 만12세에서 만10세로, 상한도는 만19세에서 만18세로 조정하는 것과 소년법적용여부를 가정법원이 결정하는 법원선의주의를 개혁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소년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눔터 47호(지금 법정에서는)에 실려 있습니다.

2) 가해자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 심각 //

피해자들이 고소를 꺼리는 데 있어 주로 호소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가해자 측 가족 등 주변인에 의해 발생하는 2차 피해이다. 2004년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 가족에 의해 주로 나타나는 2차 피해 유형은 다음과 같다.

피해사실 유포에 대한 위협(피해 사실을 허위로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 지속적으로 직장으로 전화를 하거나 찾아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는 협박), 신체적 위협(가해자 가족이 찾아와 납치 및 폭행, 욕설), 합의 및 고소취하 요구(가해자와의 결혼을 약속하며 고소취하 회유, 가해자의 장래를 걱정하며 합의 및 고소 취하 호소) 등이 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합의나 고소 취하를 한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돈을 요구한 꽂뱀이었다는 소문을 유포하거나 합의금으로 준 돈 뿐 아니라 자신들의 변호

1)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 자료집」 중 '가해자를 통해 본 성폭력'(권수현) 참고, 2004년

사 비용까지 돌려달라고 협박하는 경우까지 있다.

이는 성폭력 피해 후유증을 더욱 심화 시킬 수 있고, 피해자가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거나, 직장 및 일상생활 등에 문제를 겪게 되는 등 더욱 피해를 가중시키는 심각한 문제이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와 그 주변인들이 가해자 가족들의 2차 가해로 인해 대인관계에 대한 실망, 불안감, 불신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으며, 고소 후 수사과정이나 공판 참여 시 보복 위험 등으로 인해 사건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축감을 경험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직장, 학교,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해 외출을 꺼리게 된다거나, 이사나 휴학을 하는 등 피해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가해자 주변인에 의한 2차 피해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건지원자 등 주변인들에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피해 범위가 상당히 넓으며, 이는 사건 해결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가해자 주변인에 의한 2차 가해는 한국 사회 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편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다른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구하게 되나, 성폭력의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가해의 책임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서 합의하자고 협박한다. 피해자에게 있어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리겠다는 것이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해자들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맥락을 짚어내지 못한 채 가해자 측의 합의, 고소 취하 요구가 단순히 사건 해결에 있어서의 권리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다. 지금으로서는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정도가 가해자의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인데 이것 역시 현실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2차 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여 피해자 및 가족, 주변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협박이나 위협에 대한 가중 처벌, 신변보호제도의 신설 및 강화, 피해자 변호인 제도 도입, 가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교육의 제도화 등으로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건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공소시효 지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상의 한계

성폭력 피해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사회 전반의 낮은 인식 수준과 편견으로 인해 피해 직후 법적인 해결에 나서거나 고통을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1998년 형사정책연구원²⁾에 따르면 성폭력 중 강간과 강제추행의 발생률을 추산한 결과 신고·고소율은 전체 발생 건수의 6.1%에 불과하고, 본 성폭력 상담소 전체상담 중 고소한 건은 <표7>에 의하면 2002년 375건(12.7%), 2003년 422건(14.9%), 2004년 439건(18.6%)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신고·고소율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³⁾

표7. 상담사례의 법적지원(2003-2004)

<단위:건(%)>

연도	성폭력 상담건수	법적문의	고소고려	고소건수
2003	2,839	1,264 (44.5)	573 (20.2)	422 (14.9)
2004	2,362	1,532 (64.9)	704 (30.0)	439 (18.6)

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2」, 1998

3) 전반적으로 고소율이 20%에 못 미치는 상황이긴 하지만, 본 상담소 상담 중 고소하는 건수가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나마, 성폭력 피해자들이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또 이로 인해 법적해결 의지가 다소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신고·고소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특히 친족 성폭력은 피해사실이 은폐되기 쉽고, 문제제기를 하고자 해도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걱정, 가해자에 대한 이중감정, 생활기반에 대한 두려움 등의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피해자들 또한 즉각적으로 고소를 결심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⁴⁾

지난 해 친족 성폭력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유아, 어린이, 청소년 때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현재 20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 상담을 한 경우가 약 95건으로 파악되었는데, 이 경우 적게는 3-4년 전 많게는 4-50년 전에 일어난 것이어서 피해자가 법적인 해결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 고소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많았다. 이 같은 사례로는 자매들이 수십 년 전에 오빠에 의해 지속적인 강간 피해를 입었던 건, 어려서 사촌오빠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입은 후 최근의 정신과 치료를 통해 가해자를 기억한 건, 언니가 최근에 집안 갈등을 계기로 가족 안에서 있었던 성폭력 피해를 드러냈다가 동생에게도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등이 있었다.

이 경우 친족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어 피해가 장기화될 뿐 아니라, 피해가 중단된 이후에도 고통이 지속되기 쉽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만 일방적으로 가족들을 떠나게 되거나, 가해자를 피하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상하게 취급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로 인해 더욱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난다. 또, 피해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오히려 비난을 받고, 가족에게 배제되는 경우 등 피해자의 고통은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특성을 갖는다.

반면에 가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가해事實을 망각하거나 없었던 일처럼 숨긴 채 가정과 사회생활을 영위해 간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과를 요구할 시 가해자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피해자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고,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피해자를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위협을 하기도 한다.

많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현실에 분노와 좌절감을 갖다가, 용기를 내어 상담을 하고, 마지막 수단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인 해결을 시도하지만, 실제로는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배상을 받기도 어려워 갑갑한 실정이다.⁵⁾

이렇듯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겪는 현재의 고통은 인정되지 않아, 사회에 대한 실망감, 분노, 해결할 수 없음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동안 본 상담소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특별법 개정시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연장할 것을 주장해왔다. 최근 국가에 의한 의문사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배제입법을 통해 오래 전 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보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폭력 역시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피해로 인한 고통이 ‘현재적’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 등을 통해 공소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

4) 직장 내 성희롱 중 고객에 의한 피해 법적 구제 어려움

2004년 피해유형별 현황을 보면 성희롱 피해는 전체 성폭력 상담 2,362건 중 323건으로 13.7%를 차지했다. 이중 직장 내 성희롱은 211건으로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표9>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상사에 의한 피해가 158건(74.9%)로 가장 많았고, 동료에 의한 피해가 22건(10.4%), 고객에 의한 피해가 12건(5.7%), 거래처 순으로 나타났다.

4) 본 상담소 친족 성폭력 피해 상담은 2002~2004년까지의 각각 378건(12.8%), 316건(11.1%), 268건(11.3%)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의 약 10~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5) 친족 성폭력의 경우 공소시효를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7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의 경우 성폭력이라고 인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피해일로부터는 최장 10년까지로 함).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가해자 측에서 주장할 경우, 법적인 구제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표9> 2004년 직장내 성희롱 피해 중 피해자/ 가해자 관계

<단위:건(%)>

피해자/가해자 관계	상사	동료	부하	고객	거래처	기타	미상
211 (100)	158 (74.9)	22 (10.4)	2 (0.9)	12 (5.7)	10 (4.7)	3 (1.4)	4 (1.9)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은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는 관련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에 의거해 상사, 동료, 부하, 사업주 등 직장 내 관계만 제한적으로 구제 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고객의 경우는 업무관계로 밀접하게 만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범주에는 해당하지 않아, 구제 신청 조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고객에 의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의한 상담이 많았는데, 음담패설,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욕설, 외모에 대한 평가, 훑어보기, 여성 비하적 발언, 무시하는 태도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직의 특성 상 사내 친절정책을 명목으로 하여 고객을 상대로 하여 화를 내거나, 가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하기 어렵고, 회사에서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004년 상담사례 중에는 전화로 서비스를 문의하던 중 부서를 자꾸 옮긴다는 이유로 일방적 성적 폭언과 함께 욕설을 퍼붓는 피해를 겪은 사례, 휴게소에 들르는 손님에 의한 언어적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례 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심한 모욕감과 좌절감, 근로 의욕저하 등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태도는 여성들을 ‘노동권을 지닌 인격체’로 보기보다 성적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들의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고객에 비해 취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직 여성들에 대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행사하는 성폭력이다.

이에 대한 조처로 각 사업장 내에서는 반성폭력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고객의 경우에도 직원에 대한 성희롱 피해 발생시 1차적인 보호책임을 지는 사규 등을 신설하여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근무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모욕죄 등으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 증인출석이나 진술 등으로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고객우선 정책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개인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무조건적인 친절정책이 아닌, 성폭력 예방 등 여성인권에도 민감한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표10-1> 2004년 피해유형별 · 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피해유형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366	140	60	25	11	602
	(15.5)	(5.9)	(2.5)	(1.1)	(0.5)	(25.5)
강간미수	80	11	3		1	96
	(3.5)	(0.5)	(0.1)		1	(4.1)
특수강간	61	40	3		5	109
	(2.6)	(1.7)	(0.1)	0	(0.2)	(4.6)
강간치상	44	6	4		0	54
	(1.9)	(0.3)	(0.1)		0	(2.3)
성추행	511	110	179	124	11	935
	(21.6)	(4.7)	(7.6)	(5.2)	(0.5)	(39.6)
성희롱	298	8	9		7	323
	(12.7)	(0.3)	(0.4)	1	(0.3)	(13.7)
통신매체이용음란	57	6			4	68
	(2.4)	(0.3)	1	0	(0.2)	(2.9)
카메라이용촬영	19	4			4	27
	(0.9)	(0.1)	0	0	(0.1)	(1.1)
스토킹	94	3			1	98
	(4)	(0.1)	0	0	1	(4.1)
미상	16	5	14	9	6	50
	(0.7)	(0.2)	(0.6)	(0.4)	(0.2)	(2.1)
성폭력 계	1,546	333	273	160	50	2,362
	(65.8)	(14.1)	(11.4)	(6.7)	(2)	(100)

<표10-2> 2004년 가해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 건(%)>

가해 유형	연령					계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513	62	4		23	602
	(21.7)	(2.6)	(0.2)	0	(1)	(25.5)
강간미수	90	4				96
	(3.8)	(0.2)	1	0	1	(4)
특수강간	82	18			9	109
	(3.5)	(0.8)	0	0	(0.4)	(4.7)
강간치상	50	2			2	54
	(2.1)	(0.1)	0	0	(0.1)	(2.3)
성추행	765	75	44	28	23	935
	(32.3)	(3.2)	(1.9)	(1.2)	(1)	(39.6)
성희롱	309	7			5	323
	(13.1)	(0.3)	1	1	(0.2)	(13.7)
통신매체이용음란	55	6			7	68
	(2.3)	(0.2)	0	0	(0.3)	(2.8)
카메라이용촬영	18	5			4	27
	(0.8)	(0.2)	0	0	(0.2)	(1.2)
스토킹	96					98
	(4.1)	1	0	0	1	(4.1)
미상	27	3	2		17	50
	(1.2)	(0.1)	(0.1)	1	(0.7)	(2.1)
성폭력 계	2,005	183	52	30	92	2,362
	(84.9)	(7.7)	(2.2)	(1.3)	(3.9)	(100)

차 례

I . 여성긴급전화 1366	1
II . 가정폭력상담소	6
III . 성폭력상담소	9
IV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3
V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6
VI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실적	21
VII . 폭력피해여성무료법률구조실적	22

I. 여성긴급전화1366

1. 운영실태

(연도별 기준)

연도	운영주체(개소)		종사자수(명)			비고
	위탁	직영	계	상담원	자원봉사	
2002	9	7	175	136	39	
2003	10	6	179	135	44	
2004	12	4	358	144	214	

2. 상담의뢰인 및 상담방법

(단위 : 건)

연도	구분	상담건수 총계	상 담 의 뢰 인						상 담 방 법				
			소계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 교사 등	관련 기관	기타	소계	전화	내방 · 방문	사이버	기타
2002	전체 (외국인 포함)	116,664	116,664	101,581	8,169	5,164	-	1750	116,664	99,742	16,219	-	703
		100.0(%)	100.0	87.1	7.0	4.4	-	1.46	100.0	85.5	13.9	-	0.6
2003	전체 (외국인 포함)	156,805	156,805	129,748	14,351	10,075	-	2,631	156,805	151,411	4,320	1,020	54
		100.0(%)	100.0	82.7	9.2	6.4	-	1.7	100.0	96.6	2.8	0.6	0.0
2004	전체	154,669	154,669	127,770	12,387	3,103	8,136	3,273	154,669	142,141	8,351	2,707	1,470
	외국인	467	467	340	27	52	32	16	467	351	107	1	8
	전체 (외국인 포함)	100.0(%)	100.0	82.6	8.0	2.0	5.3	2.1	100.0	91.8	5.5	1.7	1.0

*2004년 관련기관 항목 신설

3. 상담내용의 유형

(단위 : 건)

연도	계	가정폭력	성폭력	성상담	이혼	가족문제	성매매	부부갈등	중독	기타
2002	116,664	25,863	5,171	-	16,538	-	1,010	-	-	68,082
	100.0(%)	4.4	22.2	-	14.2	-	0.9	-	-	58.3
2003	156,805	38,529	7,129	5,090	16,844	14,510	2,509	-	-	72,194
	100.0(%)	24.6	4.5	3.2	10.7	9.3	1.6	-	-	46.1
2004	154,669	41,208	7,627	7,420	17,285	9,366	3,237	12,157	1,665	54,704
	100.0(%)	26.6	4.8	4.8	11.2	6.1	2.1	7.9	1.1	35.4

*2004년 부부갈등, 중독항목 신설

4. 상담자 연령

(단위 : 건, 명)

연도	계	7세 미만	7-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미상
2002	116,664 (건)	189	363	2,874	13,272	30,994	21,189	6,214	1,274	40,295
		0.2	0.3	2.5	11.4	26.6	18.2	5.3	1.1	34.5
2003	156,805 (건)	441	546	3,500	13,964	31,342	39,899	15,296	2,163	49,654
		0.3	0.3	2.2	8.9	20.0	25.4	9.8	1.4	31.7
2004	143,262 (명)	1,013	1,484	4,872	17,338	38,710	32,097	9,316	2,100	36,332
		0.7	1.0	3.4	12.1	27.0	22.4	6.5	1.5	25.4

* 2004년 상담자 연령은 의뢰인(명)기준으로 보고

5. 상담조치 결과

(단위 : 건)

연도	계	관련기관 연계							현장출동 협조요청	긴급 피난처 파신	직접 상담	2차 상담 권고	기타
		계	보호 시설	전문 상담 기관	의료기 관	법률 기관	수사 기관	기타					
2002	116,664	48,187	3,366	44,821	-				502	1,072	40,592	7,183	19,128
	100.0(%)	41.3	2.9	38.4	-				0.4	0.9	34.8	6.2	16.4
2003	156,805	59,338	5,048	54,290	-	-	-	-	864	1,547	50,936	7,703	36,4171
	100.0(%)	37.8	3.2	34.6	-	-	-	-	0.6	1.0	32.5	4.9	23.2
2004	169,337	80,007	8,924	39,627	3,143	13,999	5,016	9,298	726	2,189	49,906	11,403	25,106
	100.0(%)	47.2	5.3	23.4	1.9	8.3	2.9	5.4	0.4	1.3	29.5	6.8	14.8

* 2004년 양식에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 기타 관련기관 연계 항목 신설

- 관련기관 연계 조치 과정

(단위 : 건)

연도	계	전용선 활용 one-stop연계	전문 기관 연계	
			정보안내	내담자연계
2004	80,007	14,726	61,903	3,378
	100.0(%)	18.4	77.4	4.2

* 2004년 관련기관 연계 조치 과정 신설

6. 지역협의체 및 네트워크구축 현황

(단위 : 개)

연도	계	보호 시설	상담소	사회 복지관	112 · 119	의료 기관	응급 구조단	법률 기관	법원	검찰	경찰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	학교	기타
2002	666	69	229	16	31	87	0	39	4	5	64	29	-	93
	100.0(%)	10.3	34.4	24	4.7	13.1	0.0	5.9	0.6	0.8	9.6	4.3	-	13.9
2003	724	76	232	19	23	85	2	44	4	5	93	58	-	83
	100.0(%)	10.5	32.0	26	3.2	11.7	0.3	6.1	0.6	0.7	12.8	8.0	-	11.5
2004	600	81	209	13	22	50	1	34	7	7	65	62	6	43
	100.0(%)	13.5	34.8	22	3.7	8.2	0.2	5.7	1.2	1.2	10.8	10.3	1.0	7.2

7. 자원봉사자 활용

- 자원봉사자 현황

(단위 : 명, 시간)

연도	계	전문봉사	일반봉사
2004	참여인원 (명)	3,814	380
	활용시간 (시간)	32,983	3,163

- 상담시간대별 배치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9:01 ~ 18:00 (주간)	18:01 ~ 24:00 (야간)
2004	전문봉사	3,814	3,084	730
	일반봉사	380	354	26

8. 외국인 여성 이용 관련

- 동시통역시스템 이용 현황

(단위 : 건)

연도	계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기타
2003	31	7	23	0	0	0
	100.0	22.8	74.2	0.0	0.0	0.0
2004	44	8	36	0	0	0
	100(%)	18.2	81.8	0.0	0.0	0.0

- 상담내용

(단위 : 건)

년도	계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	산업재해	임금	의료	불법체류	출국	기타
2003	199	16	10	-	4	-	10	4	-	3	152
	100.0	8.0	5.0	-	2.0	-	5.0	2.0	-	1.5	76.5
2004	267	7	6	172	31	1	2	2	9	1	36
	100.0	26	2.2	64.4	11.6	0.4	0.7	0.7	3.4	0.4	13.6

- 조치결과

(단위 : 건)

계	계	관련기관 연계						현장출동 협조요청	기타
		외국인 보호시설	외국인 성매매 및 성폭력 상담소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	법률기관	의료기관	기타		
2003	199	54	39	-	-	-	-	5	101
	100.0	27.1	19.6	-	-	-	-	2.5	50.8
2004	513	94	37	13	67	13	72	7	210
	100.0	18.3	7.2	2.5	13.2	2.5	14.0	1.4	40.9

II. 가정폭력상담소

1. 운영실적

(단위 : 개소, 건, 명)

연도별	개소수	종사자수			상담실적(건)			평균상담실적	
		계	상담원	자원봉사자	계	가정폭력	기타	개소당	상담원 1인당
2002년	159	382	382	-	177,413	91,391	86,022	1,116	464
2003년	177	398	398	-	195,286	99,376	95,910	1,103	491
2004년	182	398	398	-	193,439	90,497	102,942	1,062	486

0085726

2. 상담자 및 상담방법

(단위 : 건, %)

연도	계	상 담 자				계	상 담 방 법				
		본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 교사등	기타		내방	방문	전화	사이버	기타
2002	177,413	147,854	15,605	5,125	8,829	177,413	50,189	3,563	108,025	10,113	5,523
	100%	83.3	8.8	2.9	5.0	100%	28.3	2.0	60.9	5.7	3.1
2003	195,286	164,931	15,878	6,984	7,493	195,286	52,225	5,063	120,103	13,650	4,245
	100%	84.5	8.1	3.6	3.8	100%	26.7	2.6	61.5	7.0	2.2
2004	193,439	166,341	15,103	5,785	6,190	193,419	56,514	9,732	116,555	9,292	1,326
	100%	86	7.8	2.9	3.3	100%	29.2	5	60.2	4.8	0.8

3. 상담 내용

(단위 : 건)

연도	계	가정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생활	자녀 문제	성상담	기타
2002	177,413	97,728	79,685	44,393	6,483	4,594	24,215
	100%	55.1	44.9	-	-	-	-
2003	195,286	99,376	95,910	52,118	7,903	4,028	31,861
	100%	50.9	49.1	-	-	-	-
2004	계	가정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193,439	90,497	102,942	4,159	782	28,143	20,290
	100%	46	54	-	-	-	-
가족 문제							
증독							
기타							

4. 피해자 연령

('02~'03 : 건, '04 : 명)

연도	계	연령							미상
		13세 미만	13~ 19세	20~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 이상	
2002	97,728	2,324		11,259	36,456	32,278	10,651	3,486	1,274
	100%	2.4		11.5	37.3	33.0	10.9	3.6	1.3
2003	★99,376	1,806		10,675	35,007	34,676	12,383	4,130	699
	100%	1.8		10.7	35.2	34.9	12.5	4.2	0.7
2004	☆68,786	449	1,056	7,087	22,586	24,146	9,104	2,648	1,710
	100%	0.6	1.5	10.3	32.8	35.1	13.2	3.8	2.7

주) '02~'03년은 상담건수, '04년 피해사례수(명)

5. 가정폭력가해자 유형

(단위 : 명)

연도	계	배우자	과거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기타
2002	97,728	81,142	4,120	3,798	1,229	447	570	6,422
	100%	83.0	4.2	3.9	1.3	0.4	0.6	6.6

	99,376	82,795	4,017	5,113	1,536	395	670	4,850
2003	100%	83.3	4.0	5.1	1.6	0.4	0.7	4.9
	71,025	62,629	2,144	2,891	871	205	406	1,879
2004	100%	88.1	3.1	4.1	1.2	0.3	0.6	2.6

주) '02~'03년은 상담건수, '04년은 피해사례수(명) 기준

6. 지원내용(조치결과)

(단위 : 건)

연도	피해자						가해자		
	계	상담후 귀가	치료 귀가	복지 시설 입소	무 률 지	료 구 조 원	기타	계	고 고 소 발
2002	177,416	109,329	3,111	3,542	-	-	61,431	-	-
	100%	61.6	1.8	2.0	-	-	34.6	-	-
	★97,728	67,234	2,446	3,277	-	-	24,771	14,637	784
	100%	68.8	2.5	3.4	-	-	25.3	15.0%	0.8%
2003	195,286	122,113	2,167	3,851	2,607	64,548	-	-	-
	100%	62.5	1.1	2.0	1.3	33.1	-	-	-
	★99,376	61,882	1,799	3,711	1,787	30,197	12,223	1,343	10,880
	100%	62.3	1.8	3.7	1.8	30.4	12.3%	1.4%	10.9

연도	계	심리· 정서적 지원	수사·법적지원				의료지원			시설 입소 연계	기타
			수사 의뢰	수사 동행	법률 상담	소송 지원	치료 동행	치료비 지원	의료기관 연계		
2004	112,790	69,573	680	286	31,294	2,451	553	187	1,196	3,420	3,150
	100%	61.6	0.6	0.3	27.7	2.2	0.5	0.2	1.1	3	2.8

연도	계	가해자								
		개인면담			교육프로그램운영			타기관 의뢰		기타
2004	22,148	9,135			6,478			659		5,876
	100%	41.2			29.2			2.9		26.7

III. 성폭력상담소

1. 운영실적

(연도말 기준)

연도별	개소수	상담원수	상담실적		평균상담실적	
			성폭상담	기타상담	개소당	상담원 1인당
2002년	105	326-	26,815	21,297	463	148
2003년	115	351	29,069	22,362	447	147
2004년	124	382	37,131	85,638	990	321

주) '04년 통계실적은 성폭상담소(통합상담소포함)와 장애인전문성폭상담소실적의 합산.

※ '04년 실적의 급증(특히 '기타실적')은 인터넷상담의 폭증과 성교육전문상담소의 실적증가에 기인.

2. 상담자 및 상담방법

(단위 : 건, %)

연도 (상담 소수)	계	내 담 자				상 담 방 법						
		본 인	가 친인 족	동 이 료 우 교사 등	기타	내방	방문	전화	서신	사이 버	기타	
2002 (104)	전체	48,112	31,950	8,158	5,948	2,056	10,019	4,138	28,838	1,399	-	3,718
		100%	66.4	16.9	12.4	4.3	20.8	8.6	60.0	2.9	-	7.7
	장애인	4,942	2,868	1,180	841	53	1,223	1,481	2,141	35	-	62
		100%	58.0	23.9	17.0	1.1	24.7	30.0	43.3	0.7	-	3.6
2003 (115)	전체	51,431	33,225	9,423	6,946	1,837	9,766	5,290	30,846	384	4,700	445
		100%	64.6	18.3	13.5	3.6	19.0	10.3	60.0	0.7	9.1	0.9
	장애인	4,778	2,385	1,265	1,088	40	794	1,262	2,505	27	21	169
		100%	49.9	26.5	22.8	0.8	16.6	26.4	52.4	0.6	0.4	3.6
2004 (124)	전체	122,769	93,064	16,036	6,426	6,747	15,826	13,071	51,910	-	40,078	1,889
		100%	80.8	12.1	5.9	1.2	12.9	10.6	42.3	-	32.6	1.6
	장애인	8,057	3,441	2,471	1,040	1,105	1,360	2,651	791	-	3,130	227
		100%	42.7	30.7	12.9	13.7	16.8	32.9	9.8	-	38.8	1.7

3. 상담내용

(단위 : 건)

연도 (상담 소수)	계	성폭력 상담	기타상담									
			소계	가정 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 갈등	성상담	가족 문제	중독	기타	
2004 (124)	전체	122,769	37,131	85,638	8,242	3,690	5,128	8,769	45,116	3,876	963	9,323
		100%	30.3	69.7								
	장애인	8,057	4,785	3,272	936	44	10	28	464	435	4	1,366
		100%	59.7	40.3								

주) 위 서식(통계)은 '04년도 추가.

4. 피해자 유형 및 연령

('02~'03 : 건, '04 : 명/사례수)

연도 (상담 소수)	계	피해자 유형				피해자 연령				
		강간	성추행	기타	유아 (7세미만)	어린이 (7-13세)	청소년 (14-19세)	성인 (20세이상)	미상	
2002 (104)	전체	48,112	15,841	10,974	21,297	1,511	4,087	11,635	30,879	-
		100%	32.9	22.8	44.3	3.1	8.5	24.2	64.2	-
	장애인	4,942	2,656	598	1,688	49	310	915	3,668	-
		100%	53.7	12.1	34.2	1.0	6.3	18.5	74.2	-
2003 (115)	전체	51,431	16,165	12,904	22,362	2,201	4,781	10,742	32,877	830
		100%	31.4	25.1	43.5	4.3	9.3	20.9	63.9	1.6
	장애인	4,778	2,432	972	1,374	33	210	949	3,582	4
		100%	50.9	20.3	28.8	0.7	4.4	19.9	75.0	0
2004 (124)	전체	23,284	9,669	9,240	4,375	1,063	2,450	6,071	11,899	1,801
		100%	41.1	40.2	18.7	4.6	10.5	26.1	51.1	7.7
	장애인	1,782	879	436	467	21	155	452	1,111	43
		100%	49.7	25.5	24.8	0.7	6.6	21	71.6	-

* '기타' 항목은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음란전화 등

5. 장애인 피해자의 장애 유형

(단위 : 명)

연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발달	정신	신장	기타
2002	4,942	955	312	100	193	3,103	57	205	11	6
	100%	19.3	7.6	3.5	3.2	52.7	1.0	7.1	1.0	0.6
2003	4,778	1,114	360	169	151	2,518	50	338	50	28
	100%	23.3	7.6	3.5	3.2	52.7	1.0	7.1	1.0	0.6
2004	937	223	38	21	22	499	-	75	-	59
	100%	23.7	4	2.2	2.3	53.2	-	8	-	6.6

주) '04년 실적보고양식('04년도 양식변경)에는 '발달', '신장' 항목이 없음

장애인 성폭 전문상담소 실적만을 기재하여 인해 전년도에 비해 통계수치가 작게 나타남
(일반성폭상담소 운영실적보고서식에는 위 장애유형분류서식 없음)

6. 성폭력 가해자 유형

(‘02~‘03 : 건, ‘04 : 명)

연도 (상담소수)	계	친족 친인척 배우자	동급생 선후배	이웃	교사 강사	직장동료 상사	모르는 사람	기타
2002 (104)	전체	48,112	6,672	4,254	4,330	1,156	4,486	6,041
		100%	13.9	8.8	9.0	2.4	9.3	12.6
	장애인	4,942	721	282	1,192	69	225	705
		100%	14.6	5.7	24.1	1.4	4.5	14.3
2003 (115)	전체	51,431	6,789	4,853	5,345	1,519	4,970	9,123
		100%	13.2	9.4	10.4	3.0	9.7	17.7
	장애인	4,778	700	416	1,535	10	247	840
		100%	14.7	8.7	32.1	0.2	5.2	21.5
2004 (124)	전체	23,284	3,872	2,572	2,491	784	3,063	4,251
		100%	16.6	11	10.7	3.4	13.2	18.3
	장애인	937	171	101	193	11	77	165
		100%	18.2	10.7	20.5	1.2	8.2	21.9

7. 지원내용(조치결과)

(단위 : 건)

연도 (상당 소수)	피 해 자						가 해 자						
	계	상담후 귀 가	치료 귀 가	복 시 입	지 설 소	무료 법률 구조 사업	기 타	계	고소 고발	선도 면담	교정 치료.	미조 치	기 타
2002 (104)	전체	48,112	23,725	2,779	1,620	-	19,988	48,112	4,018	2,712	2,370	-	39,012
	장애인	100%	49.3	5.8	3.4	-	41.5	100	8.4	5.6	4.9	-	81.1
	전체	4,942	3,339	481	364	-	758	4,942	529	509	156	-	3,748
	장애인	100%	67.6	9.7	7.4	-	15.3	100%	10.7	10.3	3.2	-	75.8
2003 (115)	전체	51,431	24,217	2,714	689	760	23,051	51,431	5,454	5,282	329	19,168	21,198
	장애인	100%	47.1	5.3	1.3	1.5	44.8	100	10.6	10.3	0.6	37.3	41.2
	전체	4,778	2,412	553	148	446	1,219	4,778	924	792	25	1,132	1,905
	장애인	100%	50.5	11.6	3.1	9.3	25.5	100%	19.3	16.6	0.5	23.7	39.9
피 해 자													
2004 (124)	계	심리 · 정서적 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		수사 · 법적지원		기타			
	전체	44,169	24,922		5,370		639		10,386		2,852		
	장애인	100%	57.1		12.5		0.7		23.2		6.5		
	전체	5,425	2845		522		283		1,379		396		
	장애인	100%	52.4		9.6		5.2		25.4		7.4		

* '04년 운영실적양식에 가해자 지원내용은 삭제됨

한편 '04년 운영실적 항목에서 「시설입소연계」 항목은 '쉼터',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입소'를, 「기타」 항목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등 포함함

IV.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보호시설 현황

(2004.12.31 현재)

연도	개소수	상 근 종 사 자 수(명)			자원봉사자	비고
		계	상담원	기타		
2003	38	104	73	31	-	-
2004	48	122	122	-	-	-

2. 입·퇴소 현황

(단위 : 명)

연도	전년도말 보호인원	입소인원			퇴소인원			년말 현원			연중평균 보호인원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소계	입소자	동반 아동	
2002	267	3,286	2,214	1,072	3,241	2,214	1,027	312	208	104	294
2003	282	3,911	2,613	1,298	3,773	2,546	1,227	409	263	146	379
2004	584	4,232	2,747	1,485	4,043	2,637	1,406	598	447	265	467

3. 피해자 연령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20세 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2002	입소자	2,214	83	271	968	681	152	59
		100%	3.7	12.2	43.7	30.8	6.9	2.7
2003	입소자	2,613	60	397	1,055	816	199	86
		100%	2.3	15.2	40.4	31.2	7.6	3.3
2004	입소자	2,747	59	342	1,099	919	246	82
		100%	2.1	12.4	40	33.4	8.9	3.2

* 동반아동을 제외한 입소자 기준

4. 입소시 동반한 아동

(단위 : 명, %)

연도	아동동반	계	3세 미만	3세 이상	7세 이상	13세 이상	19세 이상
----	------	---	-------	-------	-------	--------	--------

	피해자수			-6세	-12세	-18세	
2002	-	1,072	121	373	402	155	21
		100%	11.3	34.8	37.5	14.5	1.9
2003	-	1,298	197	440	463	157	41
		100%	15.2	33.9	35.7	12.1	3.1
2004	1,151	1,485	209	422	575	225	54
		100%	14.1	28.4	38.7	15.1	3.6

주) '아동동반피해자수' 항목은 '04년 서식부터 추가

5. 입소경로

(단위 : 명, %)

연도	계	본인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일반 행정기관	경찰	사회단체 (복지시설)	학교 교사	병원	1366	기타
2003	2,613	-	1,049	40	187	355	214	3	9	168	588
	100%	-	40.1	1.6	7.2	13.6	8.2	0.1	0.3	6.4	22.5
2004	2,747	532	677	28	65	272	112	12	7	766	276
	100%	19.3	24.6	1.1	2.3	9.9	4.1	1.4	0.2	27.8	8.3

주) '본인' 항목은 '04년 서식에서 추가

6. 보호기간

(단위 : 명, %)

연도	계	3일이하	4일 - 7일이하	8일 - 1월 이하	1월초과-2월이하	2월초과-3월이하	3월이상
2002	3,241	457	466	1,156	663	365	134
	100%	14.1	14.4	35.7	20.4	11.3	4.1
2003	3,773	560	522	1,198	851	537	105
	100%	14.9	13.8	31.7	22.6	14.2	2.8
2004	4,005	565	554	1,230	741	528	387
	100%	14.2	14.1	31.2	19.6	13.6	7.3

* 동반아동을 포함한 퇴소자 기준

7. 퇴소시 상태

(단위 : 명)

연도	계	남편과 화해	연고자 인계	취업	이혼	타기관 의뢰	기타					
2002	2,214	1,062	242	350	183	185	192					
	100%	48.0	10.9	15.8	8.3	8.3	8.7					
2003	2,546	1,051	419	302	131	225	418					
	100%	41.3	16.5	11.9	5.1	8.8	16.4					
	계	혼인관계				거주상황						
		결혼관계 지속	별거	이혼 소송중	기타	남편과 동거	타 시설	재 입 소	아는사람 집거주	독립	기타	
2004	2,747	1,146	421	347	312	521	1,392	267	98	372	421	197
	100%	41.7	15.3	12.6	11.3	19.1	50.7	9.7	3.5	13.5	15.3	7.3

* 동반아동을 제외한 퇴소자 기준

8. 지원실적

(단위 : 건)

연도	계	수사의뢰	고소고발	무료법률 구조지원	병원치료	전문심리 상담	훈련학습	기타
2002	12,895	20	157	-	2,410	3,840	5,468	1,000
	100%	0.2	1.2	-	18.7	29.8	42.4	7.7
2003	14,756	93	130	432	2,369	5,626	4,953	1,153
	100%	0.6	0.9	2.9	16.1	38.1	33.6	7.8
	계	지원내용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적지원	자립지원	동반아동 지원	가해자지원	
2004	61,025	37,935	2,240	8,240	3,325	8,170	1,115	
	100%	62.1	3.6	13.5	5.4	13.3	2.1	

주) 중복지원시 합산

'심리·정서적 지원' :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인간관계훈련 등
'수사·법적지원' :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의료적 지원' :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 등

'자립지원' :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후 거주지알선 등

'동반아동지원' : 학교문제지원(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학습·놀이지도, 아동상담 등

'가해자지원' : 개인면담, 교육프로그램운영, 타기관의뢰 등

V.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 보호시설 현황

(단위 : 명)

연도	개소수	상근종사자 수			자원봉사자	비고
		계	상담원	기타		
'03	12	37	37	-	-	-
'04	15	42	42	-	-	-

2. 연령별 입소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이상
'02	전체	160	15	19	41	85
		100%	9.4	11.9	25.6	53.1
'03	전체	346	27	28	73	218
		100%	7.8	8.1	21.1	63.0
'04	장애인	61	0	2	9	50
		100%	0	3.3	14.8	81.9
	전체	344	39	31	97	177
		100%	11.3	9.1	28.2	51.4
	장애인	60	1	5	16	38
		100%	1.6	8.3	26.6	63.5

3. 입소경로

(단위 : 명, %)

연도	계	본인	보호자	1366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일반 행정관	경찰	복지시설	학교	병원	기타
'02	160	36	12	-	-	31	4	21	25	6	1	24
	100%	22.5	7.5	-	-	19.4	2.5	13.1	15.6	3.8	0.6	15
'03	346	56	40	-	-	122	13	17	53	18	0	27
	100%	16.2	11.6	-	-	35.3	3.7	4.9	15.3	5.2	0	7.8
'04	344	33	-	19	80	100	11	35	27	10	3	26
	100%	9.5	-	5.5	23.2	34.4	3.2	10.2	7.8	3.4	0.9	7.7

주) '04년 서식에 '1366', '가정폭력상담소' 항목 추가, '보호자' 항목 삭제.

4. 지원실적

(단위 : 명, %)

연도	계	수사의뢰	고소·고발	병원치료	전문심리상담	훈련학습	기타
'02	1,187	18	36	159	272	669	33
	100%	1.5	3.0	13.4	22.9	56.4	2.8
'03	185	1	10	46	53	50	25
	100%	0.6	5.4	24.9	28.6	27.0	13.5
	계	*심리·정서적 지원	*수사·법적 지원	*의료지원	*학교문제지원	*자립지원	
'04	10,093	7,452	188	1,555	492	406	
	100%	73.8	1.9	15.4	4.8	4.1	

주) 중복지원시 합산

'심리·정서적 지원' : 개인상담, 심신단련프로그램, 권리찾기교육, 전문심리치료기관연계 등

'수사·법적 지원' : 수사의뢰, 수사동행,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의료적 지원' : 치료동행, 치료비지원, 의료기관연계 등

'학교문제 지원' : 전학문제, 지도교사면담 등

'자립지원' : 취업알선, 직업훈련연계, 퇴소 후 거주지알선 등

※ '04년도 통계양식변경

5. 보호기간

(단위 : 명, %)

연도	구분	계	7일이내	8일-1월	1-3월	3-6월	6-9월
'02	전체	145	21	37	34	29	24
		100%	14.5	25.5	23.4	20	16.6
'03	전체	340	80	98	104	31	27
		100%	23.5	28.8	30.6	9.1	8.0
'04	장애인	55	7	13	12	8	15
		100%	12.7	23.7	21.8	14.5	27.3
	전체	306	70	83	81	31	41
		100%	22.8	27.1	26.4	10.1	13.6
	장애인	48	6	7	10	16	9
		100%	12.5	14.6	20.8	33.3	18.8

주) 연중 퇴소인원에 대한 보호기간

VII.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지원

1. 성폭력 치료비 집행실적

(국고기준, 단위: 천원,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교부액	치료인원	교부액	치료인원	교부액	치료인원
합계	352,044	806	324,463	1,450	310,184	2,303

2. 가정폭력 치료비 집행실적

(국고기준, 단위 : 천원, 명)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교부액	치료 인원	교부액	치료 인원	교부액	치료 인원
합계	99,118	282	99,118	394	78,020	950

VII. 폭력피해여성 무료법률구조실적(복권기금)

1. 수입 · 지출현황

('04. 12. 31. 단위 : 백만원)

구분	수 입			지 출	잔 액
	계	출연원금	이자수입		
2003년	322	318	4	321	1
2004년	945	833	112	946	-1

2. 사업실적

<총괄>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 리								미제	
		구 조			형사	기각	이송	취하			
		계	민·가사	소송 전 구조							
2003	2,390	2,276	2,271	2,230	41	5	0	31	62	21	
2004	2,872	2,722	2,711	2,660	51	11	0	35	97	18	

<사업내용별 분류>

(단위 : 건)

구 분	계	가정폭력 피해여성	성 폭력 피해여성	성 매매 피해여성
민 사	2,711	2,607	69	35
형 사	11	-	-	11
계	2,722 (100%)	2,607 (95.8%)	69 (2.5%)	46 (1.7%)

여성의 입으로, 여성의 주거권 말하기

- (연) 여성주의 시각에서 빈곤개념의 재정립, 석재은, <도시와 빈곤>, 2005.2.
- (토) 빈곤의 여성화 실태, 원인 및 정책 대안, 류정순, <경남여성단체연합 토론회>, 2004.12.
- (연) 서울시 여성쉼터 현황과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여성주의 시각에서 빈곤개념의 재정립1)

석재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여성주의와 복지국가

피어스(Pearce)는 미국에서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빈곤이 급속도로 여성의 문제로 되어가는 것을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용어로 정의함으로써, 최초로 빈곤에 대한 성적(性的) 접근의 필요성을 사회정책적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그는 미국 16세 이상 성인빈민 중 3명 중 2명은 여성이고, 노인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가구주 가구임을 밝혔다(Pearce, 1978). 피터슨(Peterson)도 1970년대를 전후하여 빈곤가구 중 남성가구주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여성가구주(특히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빈곤의 여성화는 빈곤인구 구성

1) 이 글은 '여성빈곤 극복을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2004/11/23,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발표된 원고를 주제측과 필자의 협력을 받아 간추린 것임.

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하였다(Peterson, 1987).

복지국가에 관한 여성주의 논의는 복지국가의 가치기반에 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라는 식의 성별 분업은 여성의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및 노동시장 내 성(性) 차별로 인하여 여성의 경제자원에 대한 접근권에서 배제되고 독립적 경제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사회복지정책들 역시 이러한 현실적 전계를 바탕으로 남성의 임금노동, 남성 시민권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어서 여성들의 상대적 소외와 배제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이혜경·홍승아, 2003).

루이스(Lewis)는 성별 분업 구조에 기반하여 남성부양자 이데올로기의 강도에 따라 복지국가모델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고 있다. 첫째, '강한 남성부양자 모델'로, 기혼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남편에 확고히 종속되어 있고, 여성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세금 등의 문제는 공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집에서 보살핌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확보되는 형태로,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이 대표적 국가이다. 둘째, '온전 남성부양자 모델'은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지만 적극적인 정책적 뒷반침이 제공되지는 않는 유형으로, 프랑스가 대표적 국가이다. 셋째, '맞벌이 모델'은 단일 생계부양자가 아니라 부부의 취업이 적극 장려되고 남성부양의 개념이 축소되고, 여성의 사회권이 정립되어 있고, 가정내 무급노동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유형으로, 스웨덴 등 스堪디나비아 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세인즈베리(Sainsbury)는 가족이데올로기, 수급조건, 급여단위, 과세단위, 보살핌 노동에 대한 국가개입의 형태를 중심으로 부양자 모델(breadwinner model)과 개별적 모델(individual model)을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그녀는 이를 수정, 발전시켜 권리가 개인에 기초하는가 혹은 가족관계나 결혼상태에 기초하는가, 수급권에서 성(gender)의 차

이가 전통적 성별 역할 분업에 기초하는 정도, 보살핌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범위, 유급노동에의 접근성 정도 등에 따라 남성가장체계(Male Breadwinner), 분리된 성 역할체계(Separate gender model), 개별적 소득-보살핌체계(Individual earner-career) 등 세 개의 성(性)정체계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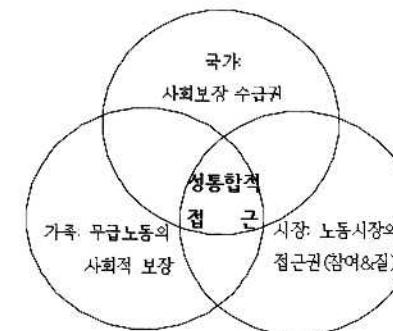
오를로프(Orlitz)는 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유형론에 성 관점을 통합시켜 복지국가의 성별화된 차원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와 시장의 관계는 기족과 여성의 무급노동을 고려하여 국가-시장-가족의 관계 차원으로 재구성하여야 하고, 둘째, 계층과 차원 역시 노동시장 내 계급위계에만 주목하고 있어 노동시장 밖의 무급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감안하지 않고 있어 성(性) 위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셋째, 시민권/달상품과 차원은 보살핌 노동과 가사노동의 성별 분업 전체, 달상품과 결과가 남녀에게 달리 적용되는 결과를 간과 한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을 수용해야 하며, 넷째, 여성들의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권 보장 및 향상이 필요하며, 다섯째, 득립적 가구를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혜경·홍승아, 2003).

여성주의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던 가족을 재발견하여 가족이 복지공급에 중요한 주체이며 사회와 시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메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게까지 가족은 사회 영역에서 개별 가족의 책임 하에 규정되고 부담되어진 가사노동 및 보살핌 노동을 무임으로 제공하는 중요한 복지공급주체였다. 주로 여성에 의해 수행되는 가족 내 무급노동은 시장과 사회에서 활동하는 임금노동자의 일상적, 세대적 유지에 중요한 메개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그 관계는 비가시적이었다. 그러나 여성주의 연구는 복지정책의 근저에 깔려 있는 성(性)문행적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여성의 무급노동이 경제 및 사회에 기여하는 관계를 밝혀내고 있다.

오크너(O'Connor)는 여성과 복지국가 논의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복지국가에서의 여성'이라는 문제에서 '성통합적 복지국가 체제(Gendering Welfare State Regimes)'의 문제로 이전되었음을 지적한다. 여성주의자들은 기존의 논의에 단순히 성을 '부가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성을 '통합' 시킴으로써 복지정책 논의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이혜경·홍승아, 2003).

결국 성통합적 관점에서 빈곤개념을 조명하게 되면 결과적인 소득의 결핍상태로서의 빈곤뿐만 아니라 빈곤을 초래하게 되는 사회경제적 관계, 즉 국가-시장-가족 영역에서의 자원 접근에서의 배제로 인한 비물질적 빈곤까지도 과학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성 빈곤 대책 역시 이와 같은 성통합적 관점에서의 영역별 빈곤 원인의 발생경로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데에서 찾아져야 한다.

<그림 1> 성통합적 관점에서의 빈곤



2. 한국의 '빈곤의 여성화': 실태 및 원인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1996~2002)와 가구소비실태조사 원자료(1996, 2000)를 활용하여 여성 빈곤의 실태 및 동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 사회에서 빈곤의 여성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빈곤의 영향요인 분석에서는 성 자체 뿐 아니라 성의 특성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교육수준, 취업상태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많은 선행 국내외 연구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노동시장, 사회보장체계 등의 종종적 결절점에 성(gender)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성의 차원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빈곤문제의 본질에 제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성가구주의 빈곤율

전체 빈곤인구 중 빈곤여성의 비중은 55%였으며, 빈곤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은 전체 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율인 18.5%의 2.5배인 45.8%였다. 여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은 21.0%로 남성가구주 가구 중 빈곤가구 비율 7.0%에 비해 3배로 나타났으며, 가구원을 감안한 빈곤율 역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10.3%로 남성가구주 가구의 6.4% 보다 2.6배 높았다. 또한 가구주 연령별로 20-64세 연령계 중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위험이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2.2배 높았으며, 65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도 1.9배 빈곤위험이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여성노인가구주 가구는 10가구 중 5-6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빈곤 가구의 성별 빈곤인구(2000) (단위: %)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458) 가구원	빈곤 남성가구주 가구(512) 가구원	전체 빈곤가구(100,0) 가구원
여성	18.0	6.4	8.7
남성	14.3	6.4	7.1
전체	16.9	6.4	7.9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

〈표 2〉 가구주 성별 연령별 빈곤가구 비율 및 빈곤율(2000) (단위: %)

가구주 연령	여성가구주 가구(A) 가구원	남성가구주 가구(B) 가구원	전체가구	A/B(배)
가구	20세 미만	9.7	10.0	9.8
	20-64세	11.8	5.3	2.2
	65세 이상	56.1	29.3	1.9
전체	21.0	7.0	10.1	3.0
가구원	20세 미만	9.8	9.8	1.0
	20-64세	11.5	5.4	2.2
	65세 이상	51.0	25.1	2.0
전체	16.9	6.4	7.9	2.6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9.3%에서 1997년 6.8%로 낮아지다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13.2%, 1999년 16.9%까지 높아졌고, 2000년 13.3%, 2001년 11.0%, 2002년 9.3%로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1997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2.5%에서 1997년 2.2%로 낮아지다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5.6%, 1999년 5.9%까

지 높아졌다가 2000년 4.1%, 2001년 3.4%, 2002년 2.4%로 다시 낮아졌고, 거의 1997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또한 성적 빈곤 격차에 대한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전에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 주에 비하여 3.75배 수준이었는데,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는 남성가구주의 가구의 빈곤율 증가율이 여성가구주의 가구의 최고 2.6배에 이르고 가구주 성별간의 빈곤위험도 2.34배 수준까지 축소되는 등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위험이 성별간에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의 3.88배 수준으로 다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여성가구주의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22.2%에서 1997년 20.9%로 낮아졌다가,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22.0%, 1999년 24.0%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 22.1%, 2001년 21.8%, 2002년 21.9%로 다시 낮아지고 있으나, 1997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가구주의 가구의 빈곤율은 1996년 7.2%, 1997년 7.0% 수준에서 1997년 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1998년 9.3%, 1999년 8.7%까지 높아졌다가, 2000년 7.7%, 2001년 7.6%, 2002년 7.0%로 다시 낮아졌고, 1997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여성가구주의 가구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의 가구에 비하여 최저 2.4배에서 최고 3.1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가구주의 가구가 남성가구주의 가구보다 빈곤율이 최저 12.8% 포인트에서 최고 15.2%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전에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에 비하여 3.1배 수준이었으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남성가구주의 가구의 빈곤율 증가율이 여성가구주의 가구의 최고 4.8배에 이르고 가구주 성별간의 빈곤위험도 2.35배 수준까지 축소되는 등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위험이 성별간에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제위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여성가구주의 빈곤위험은 남성가구주의 3.12배 수준으로 다

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주목해야 할 것은, 경제위기의 절정이었던 1998년과 그 이후 회복 과정에서 보여진 여성가구주의 가구와 남성가구주의 가구간의 빈곤율 전개 양상에 차별성이 관찰된다는 점이다. 남성가구주의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1998년에 빈곤율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1999년에는 그 증가율이 주춤하면서 2000년 이후에는 빈곤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여성가구주의 가구의 경우 1998년에 빈곤율이 급증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1999년에도 상당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2000년 이후에도 빈곤율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즉, 남성가구주의 가구의 경우 급작스런 경제위기로 실업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가 비교적 빠르게 계자리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여성가구주의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장기간 영향을 미치며 그 회복과정도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빈곤율과 경제위기가 회복된 2002년 빈곤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남성가구주의 가구의 경우 빈곤율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여성가구주의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보다 거의 3% 포인트 높은 빈곤율을 보이며 경제위기 이전의 2/3 수준으로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확인된다. 즉, 여성가구주의 가구의 경우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다수가 빈곤층에 계속 머물게 되는 빈곤의 고착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경제위기의 회복과정에서의 성적 격차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탈빈곤의 수단을 가지지 못하여, 한번 빈곤층으로 전락하면 빈곤계층으로 고착되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된다.

〈표 3〉 가구주 성별 빈곤동향 비교: 도시 근로자 가구 기준

전체	최저생계비		전년대비		B/A (비) (%)	B-A (%)		
	빈곤율(%)		빈곤율 증가율(%)					
	남(A)	여(B)	전체	남	여			
1996	9.25	24.7	9.27	-	-	3.75	6.80	
1997	8.80	22.4	8.88	13.8	8.31	8.63	3.05	4.59
1998	8.35	5.61	13.15	12.8	23.0	9.25	2.34	7.54
1999	7.26	5.87	16.89	14.3	4.82	28.4	2.86	11.02
2000	5.37	4.09	13.29	8.60	8.03	82.3	3.25	9.20
2001	4.44	3.36	11.04	81.73	81.78	81.69	3.29	7.68
2002	3.46	2.42	9.28	82.21	82.80	81.59	3.03	6.86

전체	최저생계비		전년대비		B/A (비) (%)	B-A (%)		
	빈곤율(%)		빈곤율 증가율(%)					
	남(A)	여(B)	전체	남	여			
1996	9.25	7.23	22.20	-	-	3.07	14.97	
1997	8.85	7.00	21.54	8.2	8.18	87.48	2.93	13.54
1998	10.75	9.31	21.95	20.1	33.0	6.86	2.36	12.64
1999	10.91	8.71	23.95	1.5	85.44	9.11	2.75	15.24
2000	10.02	7.71	22.18	8.2	81.15	87.77	2.87	14.38
2001	9.92	7.60	21.98	8.0	81.43	82.25	2.84	13.99
2002	9.70	7.01	21.88	82.2	87.76	1.34	3.12	14.87

자료: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특성별 빈곤율과 1996년과 2000년간 경제 위기 영향으로 인한 빈곤율의 변화 양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령 별로는 65세 이상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53.2%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빈곤율의 변화가 가장 커진 현령층은 근로연령계 층인 20-64세 여성가구주였고, 65세 이상 노령 여성가구주의 빈곤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표 4〉).

〈표 4〉 빈곤 여성가구주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연령 미만	20-29	30-39	40-49	50-64	65-69 이상	전체	
1996(A)	18.2	1.9	4.5	5.0	6.3	34.4	9.3
2000(B)	18.4	2.7	11.2	10.6	16.6	53.2	21.0
증감률(%)	1.1	42.1	148.9	112.0	163.5	54.7	125.8
증감률(B-A)	0.2	0.8	6.7	5.6	10.3	18.8	11.7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

학력과 여성가구주 빈곤율은 정확히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학의 경우 빈곤율이 58.3%로 가장 높고 대학교 이상의 빈곤율이 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빈곤율의 변화율이 가장 커던 학력 계층은 고졸 계층으로 동기간 무려 282%증가하였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고졸계층 여성가구주가 경제위기 과정에서 일자리 상실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 뒤를 이어 초등학교, 중학교, 무학의 순으로 빈곤율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저학력계층이 경제위기의 타격에도 더욱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표 5〉).

〈표 5〉 빈곤 여성가구주의 학력별 분포 (단위: %)

학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전체	
1996(A)	35.7	8.3	5.0	2.5	4.0	1.7	8.0	9.3
2000(B)	38.3	25.3	12.8	9.8	2.8	2.5	0.0	21.0
증감률(%)	8.3	204.8	156.0	292.0	80.0	47.1	0.0	125.8
증감률(B-A)	22.6	17.0	7.8	7.3	4.2	0.8	0.0	11.7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2000) 원자료; 최저생계비 기준 빈곤율.

무배우 여성가구주의 경우 유배우의 경우보다 빈곤율이 2.3배 이상

현격히 높으며, 경계위기 과정의 빈곤율의 증가율도 무배우의 경우가 훨씬 높았다. 가구규모별로는 1인가구의 빈곤율이 2인 이상 가구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율 증가율 역시 1인 가구가 가장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25배 가량 높았고, 빈곤율 증가율도 비정규직이 훨씬 높았다.

2) 빈곤의 영향요인

빈곤의 영향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주 인력 특성의 빈곤에의 영향을 보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에, 가구주 연령이 낮거나 혹은 매우 높은 경우에, 가구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무배우 > 유배우 > 미혼 순으로 빈곤상태에 놓일 위험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취업 특성의 빈곤에의 영향은, 무직 > 임시일용직임금근로자 > 자영자 > 상용직임금근로자 순으로 빈곤에 떨어질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으며,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에 비해 빈곤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의 빈곤에의 영향을 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취업자 수가 적을수록, 독신가구 > 부부(+자녀)가구 > 혼부로가구 순으로, 비장역시에 거주하는 경우 빈곤 상태에 놓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성의 경우, 취업 특성 및 가구 특성 변수가 통제변수로 투입된 모델에서는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성 자체보다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이 가지게 되는 노동시장에서의 특성, 가구 특성이 결국 여성인 남성보다 빈곤 위험에 높게 노출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여성 가구주의 노동시장의 참여 여부와 참여의 질이 남성가구주의 빈곤위험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성과 무직 변수간의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구주 인력 특성, 취업 특성, 가구 특성 등 모든 변수를 투입하여 빈곤가구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

는 성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 빈곤가구 영향요인과 남성가구주 빈곤가구 영향요인을 각각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주 인력 특성면에서는 가구주 성별 빈곤가구간에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구주 취업 특성면에서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영자에 비하여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비빈곤 확률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자영자에 비하여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빈곤 확률은 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남녀 가구주의 차이는 여성의 경우 상용직 임금근로자라 하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인하여 자영자보다 높은 소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성년 자녀를 가진 전체가구의 빈곤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무직과 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한 결과, 가구주의 성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가진 여성 가구주의 빈곤 위험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무려 74.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연수가 1년 증가하는 경우 빈곤 위험은 1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배우의 경우 유배우에 비하여 빈곤 위험이 무려 3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빈곤가구 분석 결과와 달리 미성년 자녀를 가진 빈곤가구 분석의 경우, 무직이 자영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빈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직 > 임시일용직근로자 > 자영자 > 상용직 임금근로자 순으로 빈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 1명이 증가할 때마다 빈곤 위험은 0.03% 증가하며, 취업자 수 1명이 증가할 때마다 빈곤 위험은 7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가진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무직이 유의미한 영향요인인데 반하여 미성년 자녀를 가진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는 무직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선택적 무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수 있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성평등 관점에서의 '빈곤의 여성화'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

1) 선진외국 비교연구의 시사점

코르피(Korpi)는 OECD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성 정책모델을 가족모델, 종립모델, 개별모델로 유형화하고, 성 정책모델 유형별로 경제활동 참여 측면에서 여성과 남성 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정주부의 성 분업 모델에 입각한 '가족모델'을 성 정책모델로 삼는 국가군에서 여성의 현령과 결혼상태 및 돌봄 자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경제활동에서의 성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맞벌이 부부를 모델로 하는 '개별모델'의 국가군에서는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Korpi, 2000). 이는 성 정책 모델이 가족모델인 경우보다 개별모델인 경우 노동시장 접근에서 훨씬 성 평등적이며, 노동시장 접근 수월성에 따른 경제적 지원에의 접근권과 독립성 확보에 보다 성 진화적(gender-friendly) 유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표 7>).

한편, 캐스퍼(Casper), 맥래넌(McLanahan), 가펑클(Garfinkel)은 8개 국가의 빈곤율의 성 격차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그림 2]는 국가별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빈곤율의 성 격차가 가장 크고,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순으로 빈곤율의 성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에서 보듯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은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의 비율이 1배 가량으로 거의 빈곤율의 성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성별 빈곤율 비율: 남성 빈곤율 대비 여성 빈곤율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1.01	1.34	1.29	1.28	1.19	1.02	1.02	0.9

자료: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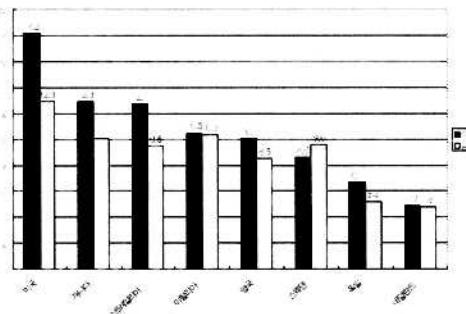
<표 7> 성 정책모델과 노동시장 참여에서의 성 격차

국가	성 정책 모델	성 격차(% 포인트)			
		여성-남성 1): 비경자활통인구	기혼여성-남성 2): 비경자활통인구	유아를가진 엄마-남성 3): 비경자활통인구	단시간 근로자 4)
이탈리아	가족모델	55	57	60	2
이탈리아	46	47	48	1	
네덜란드	43	42	58	8	
독일	36	34	38	4	
독일	32	36	53	4	
오스트리아	(30)	34	42	3	
프랑스	26	29	33	3	
일본		36	-	-	3
오스트레일리아		34	34	47	4
리아		(30)	-	-	
스위스	종립모델	25	24	47	11
영국		24	-	55	-
뉴질랜드		23	25	34	2
미국		23	19	28	2
캐나다		17	15	16	10
노르웨이		9	7	8	2
핀란드	개인모델	7	9	13	1
스웨덴		6	5	7	3

주: 1) 25-54세 여성-남성 2) 25-49세 기혼여성-남성 3) 25-59세 최소 1명이상의 유아를 가진 엄마 4) 주당 20시간 미만 근로자

자료: Korpi(2000)

<그림 2> 국가별 여성과 남성의 빈곤율



자료: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

한편,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교육, 결혼상태, 가구구성, 고용상태 변수 값을 여성 평균값에서 남성 평균값으로 대체한 경우 빈곤율의 성격차의 변화를 살펴보면, 5개국 모두에서 고용변수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은 남성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경우 빈곤율의 성격차가 100%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간의 고용상태의 차이가 빈곤율의 성격차를 가져오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 구성에서 한부모나 부모의 평균값을 남성 값으로 대체한 경우에도 빈곤율의 성격차가 14~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반면, 연령이나 결혼 상태는 남성 값으로 대체해도 빈곤율 성격차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교육도 캐나다와 미국에서만 성격차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캐나다와 미국에서만 남녀 간의 교육 격차가 빈곤율의 성격차로 이

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8> 빈곤영향 변수를 여성 평균값에서 남성 평균값으로 대체한 경우 빈곤율 성격차 감소비율

변수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독일	영국	미국
연령	-	-	-	-	-
자녀수	-	10	-	-	18
독신	-	-	-	-	-
부모	14	40	-	14	21
한부모	24	30	16	14	18
고용	100	100	100	71	71

자료: Casper, McLanahan, and Garfinkel(1994)

또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빈곤율의 성격차가 거의 없는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의 값으로 대체하는 경우, 다른 국가의 빈곤율의 성격차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빈곤율의 성격차가 거의 없는 좋은 성과를 나타낸 스웨덴, 이탈리아, 네덜란드가 각자 어떠한 변수에 의해 빈곤율의 성격차가 미미한지를 보여줄 수 있다. 스웨덴 값으로 대체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고용에서 현저한 감소율을 보였다. 역시 스웨덴은 남녀 간의 고용 평등이 빈곤율의 성격차를 없애 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탈리아 값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서 결혼 상태나 가구 구성의 측면에서 빈곤율의 성격차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탈리아가 결혼 상태나 가구 구성 요인에 의해 다른 국가보다 빈곤율의 성격차가 낮게 유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네덜란드 값으로 대체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경우 빈곤율의 성격차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이유가 주어진 사회경제적 변수가 아니라, 노동시장의 참여나 성과에 관계없이 시민권에 기반한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가

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2) 정책대안의 모색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에서 관찰된 빈곤의 여성화 경향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서도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실증할 수 있었으며, 빈곤의 성적 격차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도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여성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한편, 이혼·사별 등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한 모자 가구의 증가로 나이가 갈수록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증가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성가구 주 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증가하는 여성가구 주 가구의 주요 집단인 여성노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고, 이혼·사별로 인한 모자 가구의 상당수도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가구주의 연령계층, 학력, 부양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할빈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 및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혼·사별 등 급작스런 가족해체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위기에 직면한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에 특별한 경제적 배려 하에 당장의 빈곤계층이 아니더라도 빈곤계층에 준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사전적으로 빈곤을 예방하는 경제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평균수명 연장과 함께 더욱 심각해질 여성노인 빈곤문제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 내에서의 경제적 대응이 긴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첫째, 사회적 기회의 나눔(sharing of social opportunities)이 필요하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한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지원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protective security)에서 노동계약에 기반한 기여

(contribution)에서 시민권(citizenship)으로 수급자격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생산과 분배의 문제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각종 영역마다 매우 다양한 제도화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다. 현대 사회들에서 각종 가치 있는 활동들 및 생산물에 대한 개인적 분배를 지배하는 주요한 제도적 유형은 바로 '노동계약/labour contract'이다. 그러나 노동계약은 절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할당해 주지도 못하고 있으며, 적당한 보수와 보호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사회 질서 유지의 기초로서의 노동계약과 완전고용 제도다임은 붕괴되었다. 따라서 사회질서의 초석으로서의 노동계약이라는 명제를 버려야 한다. 이에 대한 대안은 시민권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본적 소득과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생존권을 갖고 태어났으므로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생존권은 그가 노동자로서 사회에 유익한 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얻어야 할 권리이다(Otto, 1997). 실제로 네덜란드의 시민권에 기반한 기초연금제도, 혹은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에서 볼 수 있었던 시민권에 기반하지만 소득조사를 하여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연금체계를 가진 국가의 경우에, 연금을 통한 보편적 적용범위의 확보와 최저수준의 확보가 가능하여 기초보장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별모델은 결혼관계를 매개로 부여되는 현제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이는 시민권의 개념으로 복지급여권을 갖는 것이며, 노동시장 내 지위, 결혼관계 내 지위 등이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셋째, 민주주의 정치적 참여(democracy and political participation)를 통한 여성의 힘을 증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고위직 공무원, 국회의원, 지자체 의원 등 정치권

에의 활발한 진출이 필요하며,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고 힘을 결집할 수 있는 시민사회 조직 활동이 중요하다.

빈곤층의 주류인 여성, 특히 여성기구주 가구가 빈곤해지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빈곤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것이다. 스웨덴이 세계적으로 빈곤의 성격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함께 여성의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유급휴가, 유연한 근로시간, 종부한 아동 및 노인보호 서비스 등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빈곤의 성격 격차가 가장 작은 국가의 하나인 네덜란드의 경우 노동시장의 실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 관대한 사회보장 제도, 즉 노동시장에서의 기여와 관계없이 시민권에 입각하여 사회보장금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성격 차원의 문제에 해법을 마련한 경우이다(Casper, MacLanahan and Garfinkel, 1994).

또한 선진국들에서 공적현금은 (여성)노인의 빈곤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현금수급권이 노동시장에서의 경제활동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보살핌' 노동 기간을 연금 기여 기간으로 간주해주는 연금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거나(독일, 일본 등), '보살핌'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carers' allowance)를 도입하는(독구 유럽,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의 무급의 가족 보살핌 노동(unpaid work)을 사회적 현금 보상으로 유급 노동(paid work)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방안도 궁극적으로 빈곤의 성격 격차를 해소하고 빈곤의 여성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가 여성고용 강려정책(노동시장), 가족 보살핌 노동의 유급화(가족), 시민권에 입각한 사회보장제도(사회보장) 중 어떤 정책에

특히 강조점을 둘 것인가는 여러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회정책의 성격 차원을 고려한 여성친화적(women-friendly) 사회정책이 개발되고 채택되는 것이 곧 빈곤문제, 더 나아가 사회권과 관련된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

빈곤의 여성화 실태, 원인 및 정책 대안

류정순(한국 빈곤문제연구소 소장)
poverty21@korea.com

I. 서 론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여성노인가구가 증가하는 한편 이혼·사별 등 가족해체 증가로 인한 모자가구의 증가로 날이 갈수록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증가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주요 집단은 여성노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빈곤하고, 이혼·사별로 인한 모자가구의 상당수도 여성가구주의 낮은 인적자본과 노동시장에서의 열악한 지위로 인하여 빈곤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IMF 이후 정부는 경쟁과 효율만을 철대가치로 내세운 IMF의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아들여 구조조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적당한 투기를 조장한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성장을 열매를 일부 시장경쟁력이 높은 자, 재산소득자, 정보화로 무장된 신지식층, 그리고 기득권을 이용하여 반칙을 일삼는 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분배. 그 결과 구조조정의 칼바람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의 나락으로 떨어졌거나 비정규직으로 전락. 조기은퇴가 일반화되고 불안정 고용증이 두꺼워 집에 따라 기존의 절대빈곤층에 신빈곤층이 가세하여 빈민이 양산되었는데,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근로무능력 빈곤층에 비정규직 일하는 빈곤층이 가세하여 빈곤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특히 IMF 이후 소득분배구조가 현저하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시장 실패현상이 아니라 의도된 신자유주의적인 제도개혁의 결과이다.

D) 정부의 정책 근간인 생산적 복지정책은 시장은 효율성 위주로 운영하되 시장탈락자들과 근로무능력자들의 빈곤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국민의 최저생계는 사회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부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법)으로 제정됨. 그러나 막상 기초법이 시행되고 보니 이전 생활보호 때보다 수혜자의 수가 적고, 많은 수급권자가 생계보장을 받지 못하고, 보장수준 또한 낮아서 사실상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최근에 신용불량자의 양산과 더불어 가족해체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가족해체로 인하여 새로 발생되는 여성가장 가구주는 빈곤해질 가능성이 많은 취약계층.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1992년 1.9%에 불과했던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 비율은 1996년 3.5%, 2002년 13.6% 등으로 해마다 가파른 속도로 증가. 이혼부부 10쌍 중 1쌍 이상이 '경제문제'로 헤어지고 있는 셈.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은 지난해 발표한 '가족해체 발생 원인 및 규모 추정' 보고서를 통해 국내 1431만2천여가구의 6.8%인 96만7500여가구가 봉괴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전국 1만3천여가구를 표본 추출해 산출한 이 보고서에서 김 박사는 조사대상 가구의 18.5%가 '경제적 문제'로 이혼 또는 별거 상태에 있었다고 밝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과 경제적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워 빈곤이 더욱 심화되는 특징을 보임. 김 박사의 보고서를 보면, 해체가족 유형별 순위는 모자가정이 48만9천여가구로 전체의 절반인 51%를 차지. 모자가정의 평균 총가구소득 또한 월 102만7천원으로 일반 가정의 171만5천 원은 물론 부자가정의 124만5천원에도 훨씬 못 미친. 또한 소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층 탈출 가능성은 50%에 약간 못 미치지만 일시적 요인을 모두 제거한 모형을 적용하면 빈곤 탈출 가능성은 30% 미만으로 급격히 줄어듦. 차상위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은 1994년~1996년 동안에 13.9%에서 19.3%로 높아짐. 빈곤층을 탈출한 가구 가운데 70~80%가 차상위 빈곤층. 차상위 이상으로 올라가 실질적으로 빈곤을 탈출하는 비율은 6% 정도에 불과. 나머지 96%가 빈곤탈출이 불가능한 절망의 빈곤층.

석재은(2004)의 연구 또한 양성간의 빈곤율의 격차는 경제위기시에 더욱 확대되었으며, 여성가장은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한 사람 중에서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더 어려워졌음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까지 여성단체들은 주로 여성의 권리보호, 성폭력, 가정폭력,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차별과 비정규직화에 중점을 두고 노동권의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 그러나 최근의 빈곤문제가 이와 같이 크게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된 여성복지정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부터는 여성계가 나서서 여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점. 또한 여성취업에 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 자녀 양육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위하여 여성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노령화 사회를 지나 노령사회로 세계사에 그 유래가 없이 빠른 속도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부양의 사회적 책임의 강화를 위한 활동 또한 전개해야 할 것임.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제까지 그 중요성에 비하여 간과되어 왔던, 사회권으로서의 복지권(생존권, 주거기본권, 의료기본권)의 확보와 어린이와 노인 부양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하여 여성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함.